

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접수일자 및 제출자 : 1998. 9. 17 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1998. 9. 17

다. 상 정 일 자 : 1998. 10. 28(제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
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상정, 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지적과장 성인덕)

- 종전 토지평가위원회 운영근거를 자가공사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한 것을 동법 제12조2 및 시행령 제14조로 개정하며
-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사항중 '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사항'을 '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사항'으로 개정하고
- 위촉직 위원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기만료후 절차가 미흡하여 재위촉 및 연임여부에 대한사항을 추가 신설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토지평가위원회 운영근거 및 심의사항중 일부조항을 '자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'로 개정함과 '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사항'으로 개정함으로써 내용조항을 구체화 하였으며
- 동 위원회 임기를 '2년'에서 '2년으로하며 연임할 수 있다'로 개정함으로써 위원의 빈번한 교체를 방지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